

경운대학교 교과과정혁신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사운영에관한규정시행세칙」 제12조에 의하여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운영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교과과정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부처장, 각 단과대학장, 벽강교양대학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학부(과) 및 벽강교양대학의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임무로 하며, 다음 각 호를 담당한다.

1. 핵심역량에 따른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심의
2. 전공역량에 따른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심의
3.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 심의
4.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운영성과 결과 분석
5.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CQI보고서 분석
6. 기타 교양 및 전공 교육 관련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